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4. 26.(금) / 총 6매(본문3, 참고3)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창기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최철민 • ☎ (044)201-3847, 3850, 3853
보 도 일 시		2019년 4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5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

운전자 돕는 첨단제어장치 허용, 탑승자 안전 높이도록 에어백 국제기준화

<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관련 사례 >

- *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은 김OO(35세, 여성)는 어린자녀들의 학원통학, 가까운 시내로의 근거리이동 등을 위해 새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초보운전자 이다보니 자동차운전에 자신이 없고 도심 내 운전 시 필요에 따라 차선을 자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차량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.
- ☞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방향지시등(깜박이)을 켜면 자동차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내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, 차량이 있다면 차선 변경을 해도 안전한 거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
- 차선변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일 경우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여 해당 기능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, 차선변경 등 운전이 자신이 없는 초보운전자에게도 안전한 도로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조기능 제공

□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(깜박이)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*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. 또한,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 자동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.

*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해 내부(센서, 카메라 등)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차로이탈보정, 차로변경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식제어장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령)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.

□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,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.

- 또한,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,

-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*(ABS)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.

* (Anti-lock Brake System)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·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

- 화물·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.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(택카)의 일부 등화장치(후미등,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)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소방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「소방장비관리법」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.

- 더불어 화물적재 시,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,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

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,

- 에어백 표기방법,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(ABS)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조태영 사무관(☎ 044-201-3850), 최철민 주무관(☎ 044-201-38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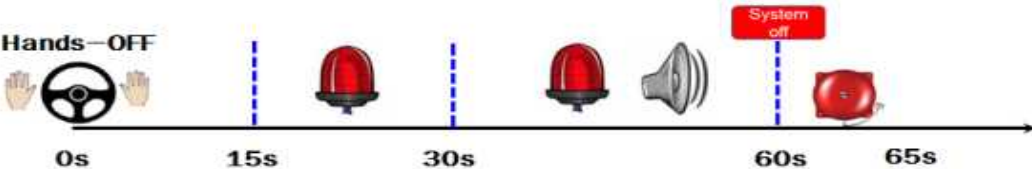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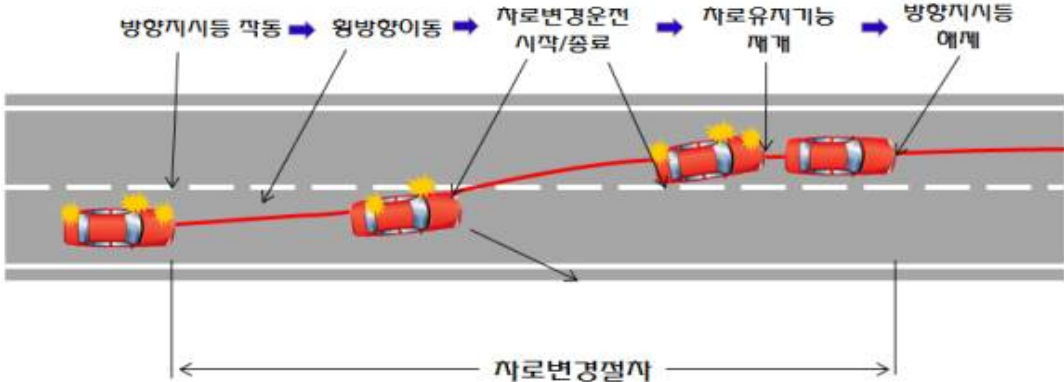
참고 1

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

□ (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) 자동명령조향기능*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레벨2 자율주행 구현

*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해 내부(센서, 카메라)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차로이탈보정, 차로변경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식제어시스템

《 자동명령조향기능 주요 사례 》

<p>원격제어 주차 기능</p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  </div> <p>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에서 리모컨과 같은 원격제어장치를 조작하면 자동으로 주차되거나 운전자가 원하는 위치까지 저속(10km/hr 미만)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기능</p>
<p>차로유지 지원기능</p>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margin-right: 10px;"> <p>Hands-Off</p>  </div>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졸음운전,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기능 작동 후 15초까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시각경고신호 발생 ② 시각경고신호 발생 후 15초까지도 핸들을 잡지 않으면 청각경고신호 추가발생 ③ 청각경고신호 발생 후 30초까지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으면 해당 기능을 정지시키고, 5초 후에 다른 종류의 청각경고신호 발생
<p>차로변경 기능</p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방향지시등 작동 → 원방향이동 → 차로변경운전 시작/종료 → 차로유지기능 개제 → 방향지시등 해제</p>  <p>차로변경절차</p> </div> <p>운전자가 방향지시등(일명 깜빡이)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옆 차선에 다른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,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접근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자동으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는 기능</p>

참고 2

자동차 에어백 경고표기 국제조화

□ (에어백 경고표기) 승객석 햇빛가리개의 바깥쪽과 안쪽면에 크기가 가로 120mm, 세로 60mm 이상의 그림문자 표기



현행



개선안(국제기준 조화)

참고 3

구난형 특수자동차 등화장치 및 소방자동차 후부반사판 설치기준 개선

- (구난형 특수자동차 등화장치) 후미등,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추가설치 근거 마련

《 후미등,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설치 사례 》



- (소방자동차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) 소방장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도장 및 표지기준 적용 근거 마련



현행



개선안(소방장비관리법)